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1. 1. 김소희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4. 11.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2.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제4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소희의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개정안은 정부가 AI 등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¹⁾,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창조기업 수는 987,812개이고, 평균 자본금은 4,800만원이며 평균 매출액은 3억 2,800만원임²⁾.

현행법 제8조³⁾는 정부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024.02.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정부는 지정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2024년 10월 기준으로 총 43개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고, 2023년 말까지 1인 창조기업 1,261개사에 대한 입주지원, 경영자문 1,361건, 10,259명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의 실적이 있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에 기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 빅데이터 등 전문 분야의 특화 역량을 보유한 센터를 특화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액이 35억원 증가하고 신규 창업이 11건 발생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함⁴⁾.

기존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 일부를 특화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한 결과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전문 분야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AI 등 유망분야 1인 창조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4) 특화전환 센터(8개) : 마포(빅데이터), 나노(반도체), 수원(3D프린터), 춘천(ICT), 대전(ICT융복합), 천안(ICT), 문경(농식품), 광주(문화콘텐츠)

다만, 개정안은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또는 ‘업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행법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 공간 및 회의장 제공,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업무·기능·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⁵⁾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급변하는 창업생태계 환경에서 AI 등 전문분야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구축 필요성

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는 동의하나,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8조와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국가전략기술 등 분야에 특화된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지정근거를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조문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함(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안 제8조의2 삭제).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 등 분야에 특화된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지정근거를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조문에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안 제8조의2 삭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전략기술 등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곳에 대해서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 ----- ----- ----- ----- ----- ----- ----- - 이 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곳에 대해서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u><신 설></u>	② ~ ⑥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전문 1인 창 조기업 지원센터)</u> <u>① 정부는 AI, 기후 테크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전문 분 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 당 분야의 전문인력 과 시설을 갖춘 기 관 또는 단체를 전 문 1인 창조기업 지 원센터(이하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 센터”라 한다)로 지 정할 수 있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제1항의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전문 1인 창조 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절차, 운 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 ⑥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 ----- ----- ----- ----- ----- <u>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